

=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20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11. 21
- 다. 상 정 일 자 :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6.12.2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허용택 문화공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과 휴폐업 등이 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능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며
-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침부와 같이(별표5)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함

3. 관계법령
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11조, 동법시행령 제41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.9㎡ 이상의 작업장
- 옥외 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.6㎡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항이며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로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합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